

제2025-41호 2025년 5월 9일(금)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조 례

○ 여수시 조례	제2191호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여수시 조례	제2192호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7
○ 여수시 조례	제2193호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여수시 조례	제2194호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여수시 조례	제2195호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여수시 조례	제2196호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여수시 조례	제2197호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 여수시 조례	제2198호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55
○ 여수시 조례	제2199호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61
○ 여수시 조례	제2200호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67
○ 여수시 조례	제2201호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 여수시 조례	제2202호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 여수시 조례	제2203호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 여수시 조례	제2204호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103
○ 여수시 조례	제2205호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107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조기승



여수시 조례 제2191호

붙임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를 “공표금지”로 한다.

제8조 중 “심의”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수상자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
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
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
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12조(추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 포상자				공적 개요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동일한 공적으로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u></p> <p>2. (생략)</p> <p>제8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u>심의</u>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 --- ----- ----- ----- ----- -----.</p> <p>1. <u>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표금지) ----- <u>심사위원회</u>과 ----- ----- -----.</p> <p>제10조(수상자 기록관리) 시장은 <u>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u>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u></p> <p>1. <u>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u></p>

<신 설>

제10조 · 제11조 (생 략)

<신 설>

임이 관명된 경우

2. 공 · 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12조(추서)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자로 접수된 자가 심사 전 사망하였을 경우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포 상 대 장

호 수	포상 년월 일	포 상 종 별	포 상 기 관	피 포상자			공적 개요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 별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조경익



여수시 조례 제2192호

붙임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연차 공무원"이란 임용된 지 3년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온보딩"이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신속히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3. "역량강화"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및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저연차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단기적인 교육·훈련에 그치지 않

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면서도 개별 공무원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온보딩 프로그램(조직 비전·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인적 네트워킹 지원)
2. 직무별 전문 교육
3.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4. 리더십 및 공직 윤리 교육
5.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최신 동향 교육
6. 현장 중심 실무 연수 프로그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기관 연수, 민간·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2. 맞춤형 경력 상담 및 경력 로드맵 수립 지원
3. 역량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앙정부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 및 개선) ① 시장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193호

붙임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93호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8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요양(), 장애(), 장제(), 유족()보상청구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제출서류</td> <td style="width: 40%;"> 1. 요양보상(①,②,③,④,⑤), 2. 장애보상(①,②,③,④,⑤,⑥) 3. 장제보상(①,②,③,④,⑤,⑥), 4. 유족보상(①,②,③,④,⑤)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수수료 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찰결과 확인사항</td> <td>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부등본, 법감증명서, 입급계좌확인정보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백이음 통의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 유 (지출발제단정)</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검 수 (재난관리 담당과)</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심 의 (지역자활방재 협의회)</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확 정 (시정)</td> </tr> </table>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②,③,④,⑤), 2. 장애보상(①,②,③,④,⑤,⑥) 3. 장제보상(①,②,③,④,⑤,⑥), 4. 유족보상(①,②,③,④,⑤)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입찰결과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부등본, 법감증명서 , 입급계좌확인정보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경 유 (지출발제단정)		검 수 (재난관리 담당과)		심 의 (지역자활방재 협의회)		결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지 급	확 정 (시정)	<p>[별지 제8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요양(), 장애(), 장제(), 유족()보상청구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제출서류</td> <td style="width: 40%;"> 1. 요양보상(①,②,③,④,⑤,⑥), 2. 장애보상(①,②,③,④,⑤,⑥,⑦) 3. 장제보상(①,②,③,④,⑤,⑥,⑦), 4. 유족보상(①,②,③,④,⑤)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수수료 없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찰결과 확인사항</td> <td>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부등본, 법감증명서, 입급계좌확인정보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정보 공백이음 통의서</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처리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 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 유 (지출발제단정)</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검 수 (재난관리 담당과)</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심 의 (지역자활방재 협의회)</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 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확 정 (시정)</td> </tr> </table>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②,③,④,⑤,⑥), 2. 장애보상(①,②,③,④,⑤,⑥,⑦) 3. 장제보상(①,②,③,④,⑤,⑥,⑦), 4. 유족보상(①,②,③,④,⑤)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입찰결과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부등본, 법감증명서 , 입급계좌확인정보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경 유 (지출발제단정)		검 수 (재난관리 담당과)		심 의 (지역자활방재 협의회)		결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지 급	확 정 (시정)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②,③,④,⑤), 2. 장애보상(①,②,③,④,⑤,⑥) 3. 장제보상(①,②,③,④,⑤,⑥), 4. 유족보상(①,②,③,④,⑤)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입찰결과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부등본, 법감증명서 , 입급계좌확인정보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경 유 (지출발제단정)																																		
	검 수 (재난관리 담당과)																																		
	심 의 (지역자활방재 협의회)																																		
	결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지 급	확 정 (시정)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②,③,④,⑤,⑥), 2. 장애보상(①,②,③,④,⑤,⑥,⑦) 3. 장제보상(①,②,③,④,⑤,⑥,⑦), 4. 유족보상(①,②,③,④,⑤)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 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입찰결과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급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부등본, 법감증명서 , 입급계좌확인정보																																		
신청인(사고자 또는 사고자 유족)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경 유 (지출발제단정)																																		
	검 수 (재난관리 담당과)																																		
	심 의 (지역자활방재 협의회)																																		
	결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지 급	확 정 (시정)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8일

여수시장 2025. 5. 8



여수시 조례 제2194호

붙임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94호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상품으로올”을 “금융상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분의 1”을 “2분의 1”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의 업무담당 국장
제9조제4항 중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3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p> <p>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u>금융상품으로</u>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p> <p>1. (생략)</p> <p>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u>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u> <u>정하는 사람</u></p>	<p>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p> <p>① ----- ----- ----- ----- <u>금</u> <u>융상품으로</u> ----- ----- -----.</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팀장</u></p>
<p>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p> <p>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p>	<p>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운용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p>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개별 기금의 조례로 지정한 기금운용관 중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기금운용관

2. (생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생략)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⑤-----

----- 2분의 1 -----.

1.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회계 또는 기금의 업무담당 국장

2.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존속기한) -----
----- 2030년 6월 30일-----.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인



여수시 조례 제2195호

붙임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심의 안건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제1항 후단 중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금고는”을 “시장은”으로, “현금으로 시에 출연해야 하며, 시장은”을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로, “편성하고 이를 공개해야”를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3항 중 “초래하는”을 “가져오는”으로 한다.

중전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8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0)	
	○ 총자본비율(안정성)	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금융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면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3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u><후단 신설></u></p> <p>③ ~ ⑤ (생략)</p> <p><u><신설></u></p>	<p>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 <u>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① <u>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u></p> <p>1. <u>심의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2. <u>심의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3. <u>심의 안건이 위원의 배우자,</u></p>

제19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지정금고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시에 출연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물품 등 비현금성 협력사업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0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생략)

③ 지정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생략)

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제20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

① 시장은 -----
-----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

----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
----. <후단 삭제>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금고운용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가져오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22조 (생략)

제22조 ~ 제23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조례 제2196호

붙임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6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을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에”를 “여수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

라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세외수입(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공적“이란”으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6.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납부 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수시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다른 자치단체에서 변호관을 영치하여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를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6조제1항제4호의”를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기간이 경과한”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1년차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2년차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3년차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에 따른”을 “세외수입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항제1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항제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제1항의 규정을”을 “제1항제2호를”로 한다.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4.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급 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3.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46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자 등”을 “신고자”로, “신고 등과”를 “신고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를

신설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③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위원 9명 중에서 위촉(외부) 위원을 5인 이상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업무 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삭제>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6조제1항제1호”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부과 취소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p>「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첨 부 : 통장사본 1부</p> <p>※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p>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신 내 고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액	징 수 액			
포 상 금 청 신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p>「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산세포함)	가 산 금	
합 계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 방 세 징 수 에 특 별 한 공 적 등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인)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산세포함)	가 산 금	
합 계					
탈 루 세 액 등 제 보					
체 납 자 은 닉 재 산 신 고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지난 연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 방 세 징 수 에 특 별 한 공 적 등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과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신 고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과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9호서식)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과장 확인
직 급	성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10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 일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과장 확인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체납자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 일자	포상금 지급액	과장 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 기분	과목 (세목)	징수 액	징수 일자	주소	성명	받은 일자	수령 액			

-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를 표시

(별지 제12호서식)

특별한 공적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 (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과장 확인
직급	성명 (생년 월일)	연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명	생년 월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의 수입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 여수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 -----.</p>
<p>제2조(지급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의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세외수입(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을 말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3항의 "특별한 공적"이란 ----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아 해당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대에 기여한 자

2. 그 밖에 세외수입의 징수 또는 증대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마.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영치 등

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3.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거나 신고하여 채납액을 징수
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
는 사유로 채납액을 징수하거
나 징수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채
납처분 관련 업무

6. 제1항제5호의 경우는 「지방
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
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 제
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부상금이 지급된 제안 내용은
특별한 공적으로 보지 아니한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없이 채납자
에 대하여 단순히 독촉장, 납

부 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여수시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5. 다른 자치단체에서 변호관을 영치하여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 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1

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한 체납액의 100분의 3

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

가.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1년차의 -----

나.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2년차의 -----

다.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3년차 이상의 -----

한 체납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신 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지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4.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외수입 관련 -----

1. 제2조제1항제6호-----
2. 제2조제1항제7호----- 제1항제2호를 -----

제4조(지급한도) -----

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포상금(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사유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1인당 분기별 300만 원
<신 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들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

-----.

1. 지급 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3. 제3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신고자----- 신고와 -----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

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수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포상금 지급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사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사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사무 담당부서의 장, 지방세부과사무 담당부서의 장, 지방세징수사무 담당부서의 장, 회계사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성 등)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①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기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 위원 9명 중에서 위촉(외부) 위원을 5인 이상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 위원은 그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행정소송 등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

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업무 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삭제>

제8조(포상금 지급) ① -----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1호 -----

--.

②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를 이유로 환급된 경우

제1항제1호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부과 취소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
하여야 한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구경익



여수시 조례 제2197호

붙임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97호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구성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 <u>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 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 정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 (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 한다.</p> <p>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 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 한다</u>.</p> <p>② ~ ⑤ (생략)</p>	<p>제2조(적용범위) ----- 「기부 <u>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 ----- ----- ----- ----- ----- ----- -----.</p> <p>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 ----- ----- 「양 <u>성평등기본법</u>」에 따라 <u>성별균 형을 고려하여</u>구성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가경민



여수시 조례 제2198호

붙임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관계 기관·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모항 및 기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입출항 환영행사 및 쉽투어 운영
4. 크루즈 체험단 운영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①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영행사 참석자에게 원거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여수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수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전라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3.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된 자는 크루즈 체험 후 설문조사 시행, 체험단 후기 작성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대상)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운영사

2. 그 밖에 시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9조(재정지원 범위)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국적 크루즈운영사의 운항 지원금

2. 여수항을 모항 및 준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손실액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분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에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8일

여수시장 서경익



여수시 조례 제2199호

붙임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위기 상황”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6. “성년”이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학업중단, 폭력 피해 등으로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
2.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민사분쟁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3.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위기 상황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의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
2.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

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상황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 번 (접수번호)		신 청 일 (접수일)	
신 청 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대 리 인 (관 계)			
지 원 내 역 (요약 또는 관련 서류 첨부)			
진행사항 및 결 과			
그 밖 의 참 고 사 항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장경희



여수시 조례 제2200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보육 및 건강관리 업무
 - 나.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 및 통학지도 업무
 - 라. 그 밖에 관리·운영 등 업무
4.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어린이 안전보호 장비”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중인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제7조(안전보호 조치) ① 원장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 장비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안전보호 장비

2. 제8조에 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비용의 일부.
단,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를 신청하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등과 상시적
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서기영



여수시 조례 제2201호

붙임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01호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를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를 “현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3항) 중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교복”을 “교복”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u>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u></p> <p>② 전입생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 <u>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 등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u></p> <p>제6조(신청 및 지급) ① <u>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지원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u></p>	<p>제3조(지원대상) ① ----- ----- ----- ----- <u>현재</u> ----- ----- ----- ----- -----.</p> <p>② ----- ----- <u>현재</u> ----- ----- ----- -----.</p> <p>제6조(신청 및 지급) <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교복 -----</p>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교복 등 지원금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3. (생략)

--.

제7조(환수) -----

-----.

<삭제>

1.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2202호

붙임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영 제8조”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를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로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2.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 또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민원처리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및 작업환경개선, 작업 특성 및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제2항 중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를 “폐기물은 「순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를 “폐기물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판매소 지정이”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안)

대형폐기물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11조, 제23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 장 고	800ℓ 이상	10,000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6,000
	300ℓ 미만	4,000
	업소용	15,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42인치 미만	3,000
세 탁 기, 건 조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컨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가스(전기)오븐렌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전 자 레 인 지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	2,000
장 농 (1쪽당)	폭 120cm 초과	15,000
	폭 90cm 초과~120cm 이하	10,000
	폭 90cm 이하	8,000
소 파	대형 6인용	8,000
	대형 4인용	6,000
	3인용	5,000
	2인용	4,000
	1인용(개당)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컴퓨터책상	2,000
식 탁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4,000
식 탁 (대리석)	6인용 이상	10,000
	6인용 미만	8,000
피 아 노	그 랜 드	15,000
	업 라이트	10,000
	디지털	5,000
서 랫 장	5단 이상	4,000
	4단 이하	2,000
신 발 장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문 갑	모든 규격	2,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장 식 대	90cm×180cm 이상	7,000
	90cm×180cm 미만	5,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침 대	2인용 이상 1인용	15,000 10,000
돌 침 대	2인용(받침 별도) 이상 1인용(받침 별도)	20,000 15,000
돌 침대 받침	2인용(돌침대 별도) 이상 1인용(돌침대 별도)	20,000 10,000
매 트 리 스	2인용 이상 1인용	8,000 5,000
유 아 용 침 대	개 당	3,000
어 린 이 2층 침 대	개 당	20,000
케 비 닷	대형(일반형) 소형(이중케비닛)	6,000 4,000
오 디 오	대 형 중 형 소 형	15,000 10,000 5,000
스 피 커	대형(높이 혹은 너비 1m 이상) 소형(높이 혹은 너비 1m 미만)	5,000 2,000
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각 2,000
프 린 터 기 (팩시밀리)	모든 규격	3,000
난 로	대형 소형	4,000 2,000
선 풍 기	대 형 소 형	3,000 2,000
밥 상	6인 이상 6인 미만	3,000 2,000
썩 크 대	가로 120cm 이상 가로 120cm 미만	5,000 3,000
찬 장	가로 120cm 이상 가로 120cm 미만	5,000 3,000
의 자	안마의자 대형(사무용 회전의자) 중형(식탁의자) 소형(등받이가 없는 의자)	15,000 3,000 2,000 1,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쌀 통	모든 규격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4,000
변 기 통	모든 규격	3,000
벽 시 계	대 형 소 형	2,000 1,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2,000
정 화 조	10인용 이상 10인용 미만	15,000 10,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가 방	골프가방	3,000
	가로 50cm 이상	3,000
	가로 50cm 미만	2,000
욕 실 수 건 합	개 당	2,000
런 닝 머 신 클 싸 이 클	개 당	10,000
칸 막 이 판 널 (파 티 션)	개 당	2,000
자 판 기	대형(1m 이상)	20,000
	소형(1m 미만)	10,000
금 고	대 형	15,000
	소 형	10,000
세 단 기	모든 규격	5,000
식 기 건 조 기	모든 규격	2,000
식 기 세 척 기	모든 규격	3,000
청 소 기	개 당	2,000
가 습 기 , 제 습 기	개 당	2,000
전 기 밥 솥 (통)	개 당	2,000
고 무 통	모든 규격	1,000
다 리 미 판	모든 규격	1,000
비 데	모든 규격	1,000
그네, 목마, 유아용자동차	모든 규격	2,000
유아용 카시트	모든 규격	2,000
항아리 및 화분	50cm 초과	3,000
	50cm 이하	2,000
돗자리, 대자리	1개당	3,000
화 환	모든 규격	2,000
병 풍	모든 규격	3,000
쓰 레 기 통	50ℓ 초과	3,000
	50ℓ 이하	2,000
블 라 인 드	1m 초과	4,000
	1m 이하	2,000
탁 자	폭 1m 이상	4,000
	폭 1m 미만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온 풍 기	264㎡ 이상	8,000
	66㎡ 이상	5,000
	66㎡ 미만	3,000
오 락 기	29인치 이상	7,000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정 수 기	모든 규격	3,000
복 사 기	모든 규격	6,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1,000
물 탱 크	1톤 이상	15,000
	1톤 미만	10,000
문 짝	현관문 및 베란다문	5,000
	방문(목재)	4,000
	창 문	3,000
개 집	모든 규격	3,000
간 판	대형(3㎡ 이상)	8,000
	소형(3㎡ 미만)	4,000
	에어풍선 간판	5,000
거 울 , 액 자	모든 규격	2,000
기 름 보 일 러	대 형	8,000
	중 형	5,000
	소 형	3,000
수 족 관	가로1m 이상	4,000
	가로1m 미만	2,000
책 장	1m 이상	8,000
	1m 미만	5,000
책 꽃 이	4단 이하	4,000
	2단 이하	2,000
관 유 리	60kg 이상	3,000
	60kg 미만	2,000
의 류 · 이 불	묶음단위 100ℓ 봉투기준	2,000
나 못 가 지	묶음단위 길이 1m×지름30cm	2,000
카 페 트	1묶음(20kg)	2,000
마 네 킹	개 당	3,000
육 조	개 당	4,000
아이스박스	대 형	2,000
	소 형	1,000
자 전 거	성 인 용	3,000
	어 린이 용	2,000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전 기 장 관 (놀 이 매트 포 함)	일반(1인용) 일반(2인용) 옥(황토)(1인용) 옥(황토)(2인용)	2,000 3,000 3,000 5,000
조 명 기 구	모든 규격	2,000
평 상	2m×2m 초과 2m×2m 이하	10,000 7,000
인형장난감류	100 l 당	2,000
텐 트	1개당	2,000
천 막	1개당	5,000
드럼통 및 페인트통 (건조페인트 6mm 미만)	10 l 초과 10 l 이하	3,000 2,000
팬 히 터	대형(1m 이상) 소형(1m 미만)	2,000 1,000
당 구 대	나무틀	20,000
탁 구 대	모든규격	7,000
미 끄 럽 틀	유아용	5,000
소 화 기	20kg이하 6.5kg이하 2.5kg이하	5,000 3,000 1,000
기 타	20kg 용량당	2,000
에어 프라이어	모든규격	2,000
음식물 처리기	모든규격	2,000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등)	모든규격	5,000
플라스틱장난감	1kg 당	1,000
파렛트	모든규격	3,000
예초기	모든규격	5,000
빨래 건조대	모든규격	2,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u>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u>규정</u> <u>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u>---</p> <p><u>제8조의2(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감량, 자원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약목적, 협약내용, 협약당사자의 역할, 협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u></p>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

⑤ 대행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가 대행 업무를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없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생활폐기물의 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

----- 다음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2.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2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

집·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계속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 또
는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자가 생활폐
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
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
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
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
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
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
는 경우

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계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및 작업환
경개선, 작업 특성 및 지역
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할 수 있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
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
물처리시설로 운반 처리하
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5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생략)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생략)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법 제13조의2 및 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폐기물은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

제1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폐기물은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

-----.

제21조(판매소 변경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법」 제22조에 따라 처분 대상자
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이 ----.

제22조(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 대행) ① -----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등의 공급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족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9조제1항에 따
른 금융기관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
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
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
관

2.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대행업체

3. (생략)

②·③ (생략)

---- 각 호에 해당하는 ----

1.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기관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장기명



여수시 조례 제2203호

붙임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안)

점용료 등 산정 기준표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p>1. 공작물 설치 (국가 또는 여수시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6/100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치 가격으로 한다.</p>
<p>2. 토지의 점용</p>	<p>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100</p> <p>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19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채시기 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 다만, 소하천구역 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5/100</p> <p>마. 관로 등 설치를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10/100</p> <p>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3/100</p>

구 분	산 정 기 준
3. 하천부속물의 점용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6/100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치 가격으로 한다.</p>
4. 유수의 점용	<p>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p> <p>나. 농업용수: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63.3원/100,000m³)</p> <p>다. 발전용수: 1만세제곱미터 당 63.3원(63.3원/10,000m³)</p> <p>라. 수열에너지용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말한다): 1만세제곱 미터당 63.3원(63.3원/10,000m³)</p> <p>마.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5. 지하의 유수 채취	<p>제4호의 기준을 준용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6. 배수(주수)	<p><삭제></p>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p>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에 걸쳐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 가격 평균치의 15/100</p> <p>나. 가목에 대한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p>
8.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p>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사항은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다.</p>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p>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p>

점 용 료 등 의 조 정 산 식 (제 3 조 관 련)

전 년 대 비 증 가 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0/100 + (증가율 - 10/100) × 3/1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3/100 + (증가율 - 20/100) × 1/1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6/100 + (증가율 - 50/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19/100 + (증가율 - 100/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 22/100 + (증가율 - 200/100) ×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25/100}]

현행	개정안
<p><u>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④·⑤ (생략)</u>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u>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업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용료 등은 제2조에 따라 산출한다.</u>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③ (생략) <u><신설></u></p>	<p><u>④·⑤ (현행과 같음)</u>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 ----- ----- ----- ----- <u>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u> ----- ----- . ----- <u>골재 채취를</u> ----- <u>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할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u></p>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월 8일

여수시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204호

붙임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1부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

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여수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5 월 8 일

여 수 시 장 서기영



여수시 조례 제2205호

붙임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3.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와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

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비 지원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난임치료 비용

나. 난임치료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
다.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2.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3.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지원

4. 난임 관련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난임부부

②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